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환자 대상 최선의 처치 의무〉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64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II.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7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4. 8. 8.

(3) 회 부 일 : 2024. 8.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u>
※ 시행일 :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고(제15조제1항 및 제89조제1호),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제60조제3항제1호).²⁾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예시하는 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있는데, 동 지침에 따르면 환자·보호자 등이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인력·병상·의약품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등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음.³⁾
-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3회 정도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아에게 경증의 장애가 있어 이전 진료시에 비협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별다른 설명없이 타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안내

1)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생략)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6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3) 참고자료 참조

한 사례,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인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정신질환이 있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타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안내한 사례에 대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⁵⁾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1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⁶⁾

4) 수사협조요청(유권해석의뢰) 회신(보건의료정책과-2695, 2024.5.3.)

○ 질의내용

- 해당 의료기관에서 3회 정도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경증의 장애가 있어 이전 진료 시에 환자의 비협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 재방문 시점에 별다른 설명없이 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를 한 상황임. 위의 진료거부 사유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질의

○ 답변내용(발체)

- 질의서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해당 의료기관은 이전에 환자를 3회 정도 진료한 이력이 있음에도 타 소아청소년과로 가도록 안내한 상황으로 보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환자의 상태가 별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였는지 및 실제 진료 상황에서 의료인의 설명 시행 정도, 환자의 비협조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 수사협조요청(의료법상 진료거부 해당여부 등) 회신(보건의료정책과-3653, 2022.7.26.)

○ 질의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환자가 복통으로 밀양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정신질환이 있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타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도록 안내한 상황이 진료거부에 해당되는지

○ 답변내용(발체)

- 귀사에서 첨부하신 경과기록지상 정신질환이 있어 검사를 하지 않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정신질환자라는 사유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말씀하신 사례의 의료법 위반여부는 상황의 긴급성, 환자의 상태, 응급처치 필요성, 의료기관의 여건(시설, 장비, 인력),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응급 진료가 가능한 타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도록 안내한 상황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가 불가피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병원에서 연계하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는지 등에 따라 의료법 위반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즉,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장애인 환자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지침 및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에도 해당하게 되므로 현행 법상 금지되는 행위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피부 미용·성형시술 진료 예약 거부, 다이어트 진료 거부, 지체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 거부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행위들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정받은 바 있고,⁷⁾ 최근 발달장애인 외상 환자의 과잉행동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⁸⁾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행위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2.)에 따르면 의료기관 중 2.2%가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장애인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⁹⁾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례: 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 사건(22진정0467500)에 대한 결정(2022. 11. 9.), 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거부 사건(22진정0640800)에 대한 결정(2022. 11. 9.), 치과의 장애인에 대한 진료거부 사건(23진정0170100)에 대한 결정(2023.12.13.)

8) “발달장애 이유로 병원 뺑뺑이-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하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4. 5. 21.

9)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으로 나타남.

사회연구원, 2024.)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유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2.6%), 의사소통의 어려움(3.6%),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0.5%) 등을 제시하는 등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가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환자가 장애를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하거나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현행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서의 차별금지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창설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의료법」 제15조제2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¹⁰⁾ 장애인 환자에 대하여도 확인적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보임.

10)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생략)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건의료 관계 법령상 “처치”라는 용어는 일련의 의료행위들(진단, 검사, 치료(주사·투약·처치 등), 수술, 처방 등) 중 일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¹¹⁾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증검토)

- 장애인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의료법」 각 규정이 규율하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11)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 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 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률」에서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및 위반 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2) 대한의사협회(반대)

□ 현행 「의료법」 제1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진료 요청 및 응급의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개정안의 신설은 불필요함.

- 개정안의 내용 중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은 불확정 개념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함에도 국민들에게 법적 강제적이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인력 확충 및 수가 가산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대한치과의사협회(수정)

□ 대부분의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단순히 지체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회피하고 있지 않으며,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진료회피가 가능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함.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이 마련되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함.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찬성)

- 진료거부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 의무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찬성)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장애인 진료거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접근성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거부 금지조항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1】	「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보건복지부 유권해석사례 참조)
---------------	---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 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참고 2】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	----------------------------------

※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② 아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참고: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진료능력 등에 비춰 봤을 때 긴급히 응급의료를 한 환자
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전원 조정 지
원**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
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
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